

화순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1.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1. 11. 30
- 다. 상정일자 : 2001. 11. 30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 : 총무위원회 조영길

나. 제정사유

- 화순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로가 지대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군 출신 인사들에게 화순군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 명예군민증을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명예군민증은 화순군 및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의 이미지 선양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한다. (제2조)
-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20세 이상 군민 30명 이상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
-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 대장을 비치하고 공로 조서 및 관계서류는 영구보존 관리한다. (제4조)
-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부여와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발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정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화순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및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의 이미지 선양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화순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화순군명예군민증 (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화순군에 본적(원적포함)이나 주소를 두지 않는 자로서 화순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화순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명예군민증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20세이상 군민 30명 또는 각급 기관사회 단체장의 명예군민증수여 추천장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화순군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서식·서류)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함께 관리한다.

③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관계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5조(권리·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부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

수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비고
	주소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지속적으로 화순군이 명예를 드높이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화순군 명예군민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 조서

연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공 로 조 서

수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第 號

명예군민증(名譽郡民證)

- 國籍 :
- 住所 또는 所屬 :
- 姓名 :
- 生年月日 :

大韓民國 全羅南道 和順郡守는 郡民을 代表하여 이 證을 드리는 것을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本人이 署名하고 和順郡의 官印을 捺印하여 名譽郡民임을 證明합니다.

年 月 日

和順郡守 ○○○(官印)

HWASUN COUNTY
 CHOLLANAM-DO
 REPUBLIC OF KOREA
 THE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 NATIONALITY :
- ADDRESS :
- NAME :
- DATE OF BIRTH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APPOINTED AS AN HONORARY CITIZEN BY THE COUNTY EXECUTIVE, ON BEHALF OF ALL CITIZENS OF HWASUN COUNTY.

ON THIS ○○TH DAY OF ○○, (YEAR)

HWASUN COUNTY EXECUTIVE ○○○

(별지 제4호 시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결 군수	제		일련 번호	국적	주소또는 주소	직업및직위	성 명	생년월일	공로개요	수 여		사 진
	부 군수	과 장								담 당	년 월 일	